

총장선임규정

제정 1997. 12. 17.
개정 1999. 1. 27.
개정 2001. 9. 13.
개정 2007. 12. 21.
개정 2010. 6. 17.
개정 2015. 10. 27.
개정 2019. 1. 17.
개정 2021. 7.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정관 제46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가 설치, 경영하는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총장 선임과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의 권한인 학교의 총장선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관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장후보대상자"라 함은 총장후보자 공모에 응하여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라 한다)에 자원 또는 추천된 모든 자를 말한다.
2. "총장후보자"라 함은 총장후보대상자 중에서 총추위가 이사회에 최종 추천한 자를 말한다.
3. "현 총장"이라 함은 총장 선임 업무 추진 당시 재임 중인 총장을 말한다.

제4조(총장선임 기본절차) ① 이사장은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12개월 이전까지 이사회 내에 총장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평가위가 현 총장에 대한 업적평가를 실시하게 한다. (개정: 2021.7.15.)

- ② 전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된 후 이사장은 현 총장의 연임 의사를 확인한다. (개정: 2021.7.15.)
- ③ 현 총장이 연임 의사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업적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10개월 이전까지 의결을 거쳐 연임 또는 불연임을 결정하며, 연임 의사가 없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후임 총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1.7.15.)
- ④ 전항에 따라 현 총장을 불연임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현 총장이 연임 의사가 없음을 이사회에 보고한 경우, 이사장은 총추위를 구성하고 총장후보자를 추천토록 요청한다. (개정: 2021.7.15.)
- ⑤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현 총장을 연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현 총장을 차기 총장으로 임명하며, 제4항에 따라 총장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경우에는 총추위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자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출된 자를 차기총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그 기한은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7.15.)
- ⑥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총장 궐위 시에는 본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차기 총장을 선임한다.
- 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총추위를 구성할 경우 이사장은 필요시 총장 선임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제5조(규정 개정) 이 규정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의결로 개정한다.

제2장 총장업적평가위원회

- 제6조(구성)** ① 평가위 위원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1인 이상의 개방이사를 포함한 법인 임원 5인으로 선임한다. (개정: 2021.7.15.)
- ② 평가위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7.15.)
- ③ 평가위는 현 총장의 연임여부가 결정됨과 동시에 그 활동이 종료된다. (개정: 2021.7.15.)

제7조(기능) 평가위는 현 총장의 업적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1.7.15.)

제8조(평가) ① 평가위는 현 총장의 업적평가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② 평가위는 현 총장 업적평가시 학교 구성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 2021.7.15.)

제9조(경비 지원) ① 법인은 평가위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② 전항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제10조(간사) ① 평가위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15.)

② 간사는 법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7.15.)

제11조(운영) 평가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15.)

제3장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1절 총 칙

제12조(구성) ① 이사장은 이사회 내에 총추위를 두며, 총추위는 이사장이 선임하는 법인 이사 4인과 학교의 전임교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5.)

② 이사장은 필요시 2인 이내에서 외부인사를 추가로 총추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③ 제1항의 위원 중 교원인 위원(이하 "교원 위원" 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자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이사장이 선임한다.

④ 교원 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⑤ 총추위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 이사장이 임명한다.

⑥ 총추위는 이사회가 차기 총장을 선임함과 동시에 그 활동이 종료된다. (신설:

2021.7.15.)

- 제13조(구성 시기)** ① 이사장은 제4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9개월 이전까지 총추위를 구성한다. 다만,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 후 1개월 이내에 총추위를 구성한다. (개정: 2021.7.15.)
- ② 제1항에 따라 총추위를 구성하기 위하여 법인에서는 총추위 구성기한일의 20일 이전까지 학교에 교원 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다만,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 후 10일 이내에 추천을 의뢰한다. (개정: 2021.7.15.)
- ③ 학교는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원 위원 추천자 명단을 서면으로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자격상실) 총추위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 규정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하였을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어 총추위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한 자. 다만,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추가 선임한 위원의 해촉은 이사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7.15.)
2. 위원 본인이 총장후보대상자에 포함된 자
3. 본인이 원하여 사퇴서를 제출한 자

제15조(위원의 결원보충) 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이사인 위원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추가 선임한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임명하여 보충하고, 교원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추천된 자를 이사장이 임명하여 보충한다. (개정: 2021.7.15.)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총장후보자 추천기한일이 30일 미만 남은 시점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서약) 총추위 위원은 비밀보장 및 공정성 준수를 약속하는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7조(기능) ① 총추위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총장후보자 추천업무를 한다.

② 총추위는 제4조 제7항에 따라 이사장이 제안하는 의견과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자료와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집, 수렴하여 가장 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총장후보자로 추천한다. (개정: 2021.7.15.)

③ 필요한 경우 총추위원장은 총추위 의결을 거쳐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총추위 활동 경과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21.7.15.)

제18조(중간보고) 총추위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추위 활동의 경과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지원) ① 법인에서는 총추위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① 총추위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법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총추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의 총장후보자 선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운영세칙) 총추위는 총추위 내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추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제2절 총장후보자 선정

제23조(총장후보대상자 자격) 총장후보대상자는 국적과 학교내외 소속에 관계없이 학문적 업적과 덕망,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학교의 특성과 건학이념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제24조(총장후보대상자 물색) ① 총추위는 총추위 구성 후 즉시 학내 뿐만 아니라 국내외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총장후보대상자를 물색하여야 한다.

② 총추위는 총장후보대상자 물색과정에서 초빙공고, 총장후보대상자와의 공식적

면담을 실시한다.

제25조(부당행위 금지) 총장후보대상자가 총장후보자선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하였을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추위는 해당자를 총장후보 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21.7.15.)

제3절 총장후보자 추천

제26조(추천인원) 총추위는 2인 이상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27조(추천기한) 총추위는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총장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 후 7개월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제28조(추천방법) ① 총추위는 총장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추천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추위는 총장후보자의 우선순위를 경과보고서에 기술하지 아니한다.
③ 총추위는 총장후보대상자 및 총장후보자 명단을 인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총장의 선임

제29조(총장후보자 심사) (삭제)

제30조(선임원칙) ① 이사장은 총추위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출된 자를 차기 총장으로 임명한다.
② 총추위가 총장후보자를 제27조에서 정한 기일 내에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기 총장을 선임한다.

제31조(선임시한) 차기 총장의 선임은 늦어도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 후 8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제5장 준수사항

제32조(총추위 위원) 총추위 위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체의 기밀을 개인적으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2. 편견이나 지연, 학연, 혈연, 문벌 등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개인적으로 수집한 모든 자료를 총추위에 공개하여야 한다.
4.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 즉시 이를 총추위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총추위 위원직을 사퇴했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후에도 총추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총장후보대상자 및 총장후보자) 총장후보대상자 및 총장후보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1. 총장후보자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자신이 총장후보대상자 또는 총장후보자라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4조(학교구성원) 학교 교원, 직원, 학생 및 연구원 등 학교 구성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개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배척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학교 구성원을 선동하거나 집단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35조(법인 이사) 법인의 이사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총장선임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2. 이사회 회의석상 이외에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배척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학교 구성원을 선동하거나 집단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4.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 즉시 이를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편견이나 지연, 학연, 혈연, 문벌 등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진상조사위원회) ① 본 규정 제32조 내지 제3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하였을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상조사를 위해 이사장은 이사회 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7.15.)

② 진상조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대상자는 협조의 의무가 있으며 협조의무 위반시 제32조 내지 제35조의 위반에 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신설: 2021.7.15.)

제37조(위반시 제재) 본 규정 제32조 내지 제3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하였을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학칙,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인사조치 및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15.)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7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월 2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1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1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당시 재임 중인 총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제4조 및 제6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연임 여부 결정없이 개정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